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 제정 : 1997. 3. 31

□ 개정 : 2013. 10. 1

□ 개정 : 2016. 8. 1

제1조(적용 및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대학교 일반직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법령·정관 및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7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 위원은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리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조고간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항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선) ① 위원회는 징계사항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9조(통고)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가 전 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 할 수 없다.

1.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우수직원으로 총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이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